

2024년도 전북 지역특화산업육성+(R&D) 신규 과제지원 설명회

2024.02.01 [THU] 14:00~

전북대학교 국제컨벤션센터 세미나실2



2024년 전북

지역특화사업육성+(R&D)

사업설명회

2024. 2. 1.(목) 오후 2시
전북대학교 국제컨벤션센터



INDEX

01

(재) 전북지역사업평가단 소개

0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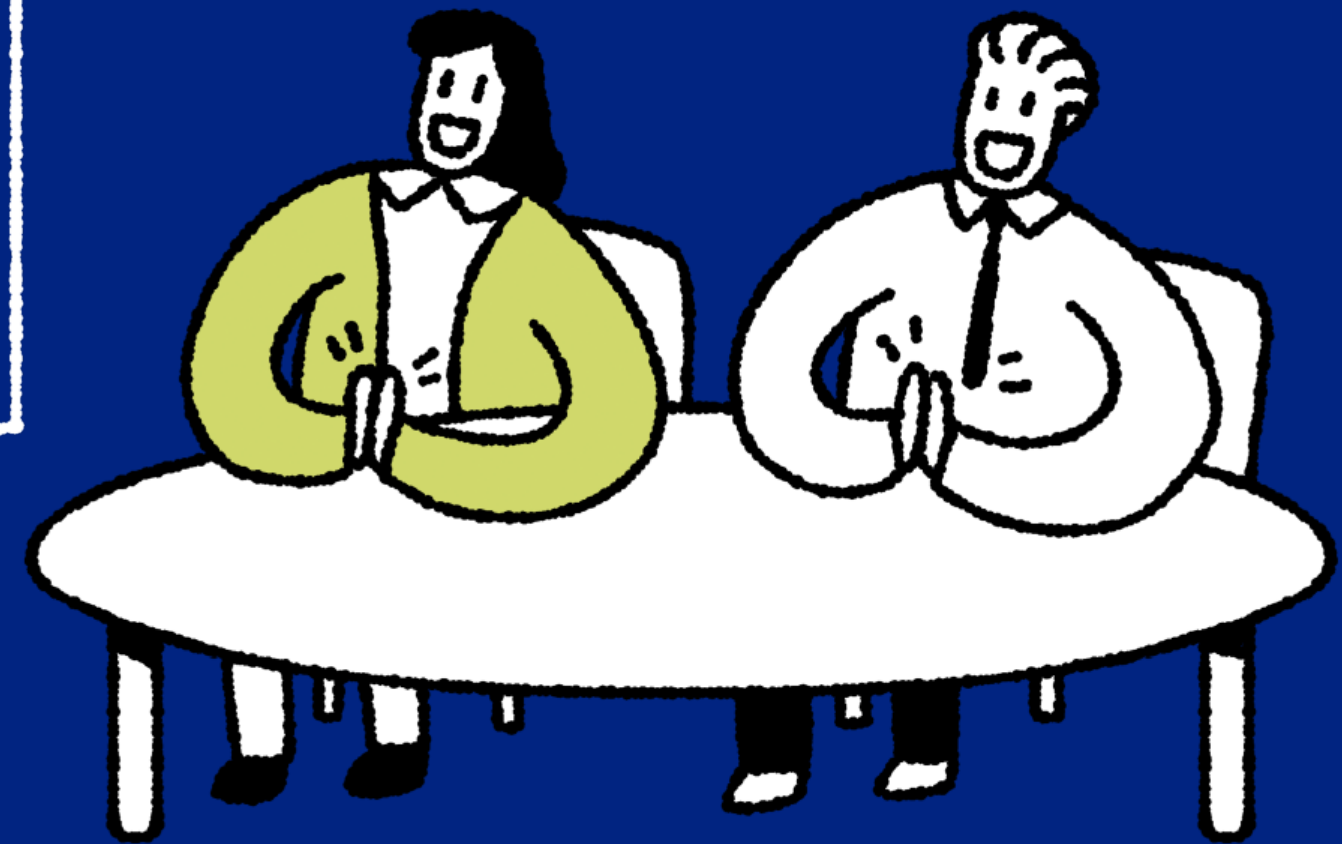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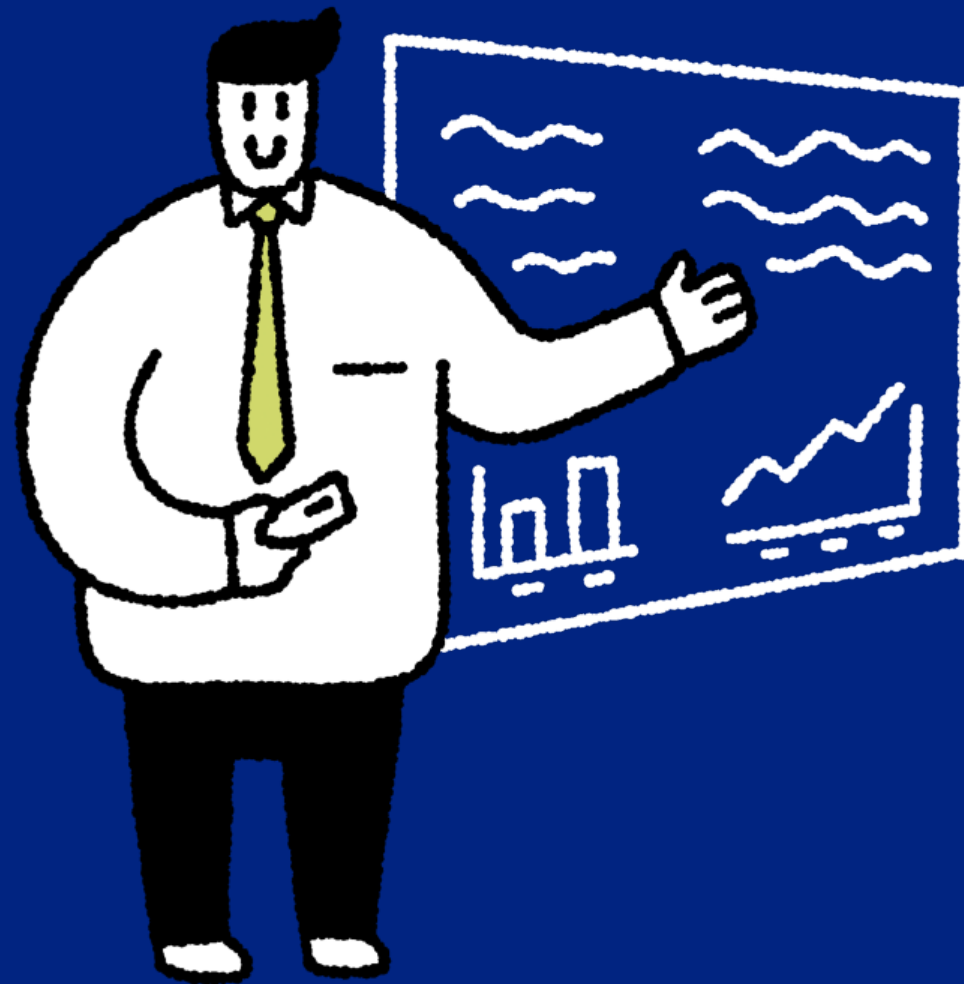
전북 지역특화산업육성+(R&D) 지원계획

03

SMTECH 온라인 신청방법 안내

1

전북지역사업평가단 소개



1. (재)전북지역사업평가단 소개

설립근거

- ▶ 「민법」 제32조와 「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」 제4조
- ▶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(지식경제부 고시 제2014-186호, 2014.10.16.)

설립목적

- ▶ 지역산업지원사업 및 지역산업육성사업의 공정하고 체계적인 기획·평가관리를 통해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

주요 업무 및 기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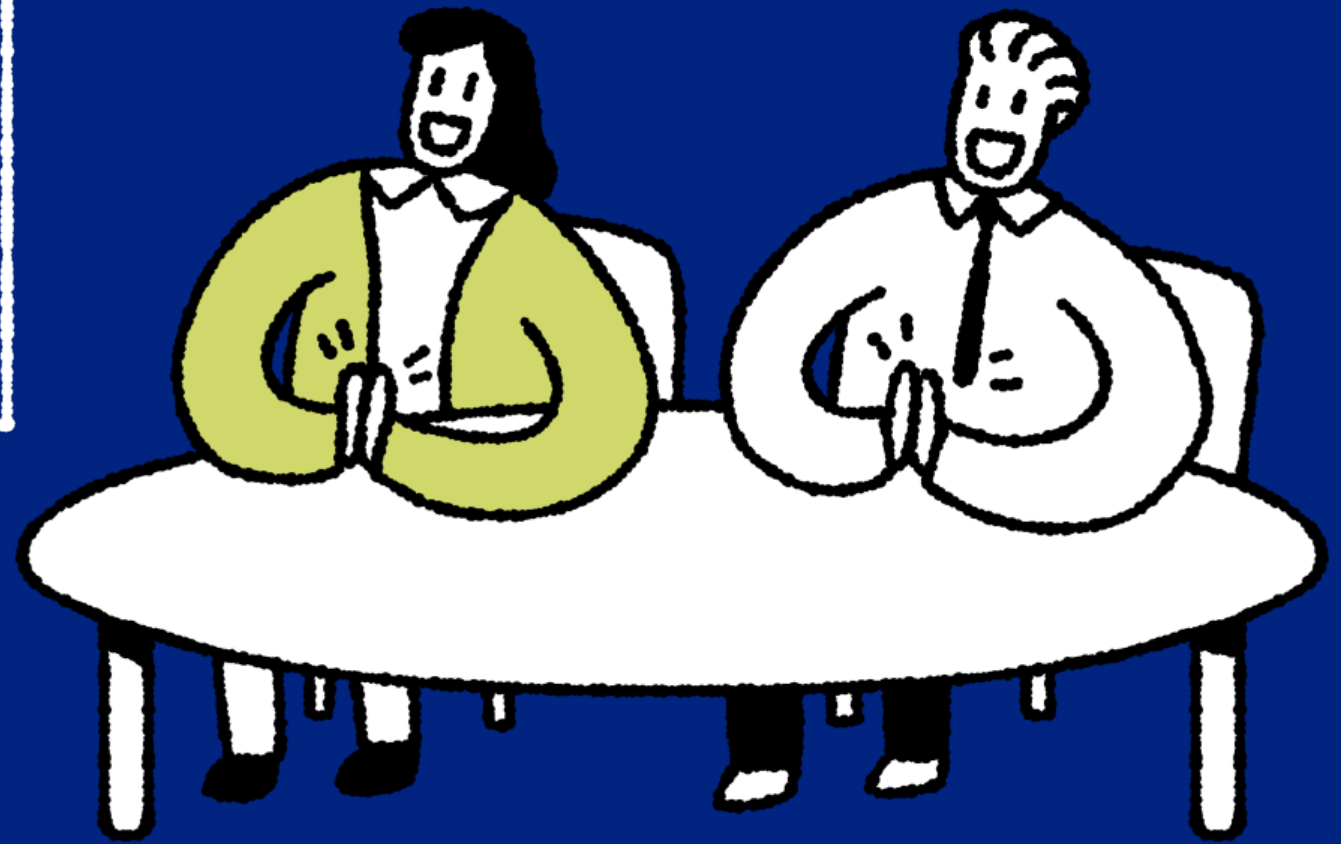
- ▶ 전북 지역사업 과제 선정·연차 최종평가
- ▶ 전북 지역사업 과제 수행 전주기적 지원
- ▶ 전북 지역사업 성과관리 및 사후관리
- ▶ 전북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 지원
- ▶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등이 위탁한 사업 기획·조사·분석 운영 등

지역사업평가단 체계



2

지역특화산업육성 +(R&D) 지원계획



1. 사업개요

- (사업목적) 지역특화산업 중점 육성 및 지역우수기업 성장 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기업의 매출 신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
- (사업내용) 지역별 여건 및 특성을 반영한 주축산업분야에 해당하는 지역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

< 2024년 지역특화산업육성+(R&D) - 지역주력산업육성 개요 >

| 내역사업 | 지역주력산업육성 |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| ①자유공모 | ②지역혁신 선도기업 |
| 지원기간 | 1년 이내 | 2년 이내 |
| 지원한도 | 연 2억원 내외 | 연 3억원 내외 |
| 지원규모 | 141.9억원 | 81억원 |
| 지원목표 | 70개 내외 | 27개 내외 |
| 추진체계 | 중소기업 단독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 | 지역혁신 선도기업 단독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 |

2. 지원 상세내용

- (지원대상) 전북지역 소재 중소기업이 주관하며, 주축산업분야에 해당하고, 고용창출 조건을 충족하는 기술개발 과제
- (지원분야) 전북지역 주축산업군

| 산업명 | 정의 | 중점 지원방향 |
|------------------|---|---|
| 농생명바이오 | ▶인간 및 동물의 건강·면역 증진을 위하여 동·식물, 미생물 등 농생명 자원을 활용한 고기능/고부가가치 원료·소재·제품(건강기능성 식품/동물용 의약품·기능성사료/메디·케어식품 &소재 등) 및 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 | ▶시장주도형 미래유망 가능성 원료/소재/최종산물의 핵심·원천 기술개발 및 기술 이전, 상용화 촉진으로 지역 중소기업의 타겟시장 진출 가속화 |
| 특수목적용 지능형기계부품 | ▶특수목적용 기계(상용/특장차/농·건설기계/특수목적선 등)의 ICT 기술 융복합을 통한 자동화/무인화/자율화 등의 기술이 탑재된 기계부품/모듈/제품을 포함하는 산업 | ▶특수목적용 기계분야별 ICT·IoT/친환경/뿌리 기술 등을 적용한 고부가·고품질 지능화 핵심부품/수출전략형 제품 개발과 상용화 지원육성으로 기업생태계 전환 구축 |
| 탄소융복합 소재 | ▶탄소소재(탄소섬유/인조흑연/활성탄소/CNT/카본블랙/그래핀)의 고기능·고부가가치화를 통한 수송기기/에너지/토목·건축/안전/생활·레이저 등 전방산업에서 요구하는 첨단소재/부품/제품을 개발하는 기술 산업 | ▶M.E.C.A산업* 중심의 고기능·경량·고부가 탄소융복합소재·부품 원천/상용화 개발 및 사업화 중점지원으로 기업생태계 경쟁력 강화 * ㉠(Mobility) : 수소·전기차, 선박, UAM ㉡(Energy) : 수소생산·저장·운송, ESS, 재생에너지 ㉢(Construction) : 토목·건축, 건설안전 ㉣(All life care) : 의료기기웨어러블기기 스포츠레저 생활안전 |

2. 지원 상세내용

□ 전북지역 지원예산 : 1,765백만원(지방비 1,765백만원)

□ 지원유형 및 지원내용

- 자유공모, 지역혁신 선도기업 2개의 유형으로 구분, **공고 내 지원유형 중 1개의 과제만 신청·접수 가능**

① 자유공모 : 총 1,165백만원(지방비 1,165백만원)

- 전북지역 주축산업 분야 중소기업의 고용창출형 신제품 개발을 위한 상용화R&D 지원

(단위: 백만원)

| 주축산업 | 정부지원연구개발비 (국비) | 지방자치단체지원 연구개발비(지방비) | 합 계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
| 농생명바이오 | - | 388 | 388 |
| 특수목적용지능형기계부품 | - | 389 | 389 |
| 탄소융복합소재 | - | 388 | 388 |
| 합 계 | - | 1,165 | 1,165 |

2. 지원 상세내용

③ 지역혁신 선도기업 : 총 6억원(국비 6억원)

- 비수도권 혁신 생태계를 견인할 지역혁신 선도기업을 대상으로 혁신형R&D 지원

* '22년 지역혁신 선도기업으로 2차 선정된 기업만 지원가능(3개社)

| 연번 | 지역 | 기업명 | 지정연도 |
|----|----|-----------|-----------|
| 1 | 전북 | 에코에너지원(주) | 2022년(2차) |
| 2 | 전북 | 신한방직주식회사 | 2022년(2차) |
| 3 | 전북 | 대우전자부품(주) | 2022년(2차) |

< 고용 의무조건 >

- 정부지원 및 지방자치단체지원연구개발비 2억원당 1명 신규 채용계획 제출 의무 (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)
 - 공고일 이전 6개월부터 채용된 인원을 신규채용으로 인정
 - 신규인력은 반드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야 신규채용으로 인정
 - 자세한 사항은 '신청방법(제출서류) 안내 및 유의사항' 참조
- ※ 고용의무조건 미충족 시 최종평가에서 보통 이상의 등급을 받을 수 없음
- 고용의무조건은 모든 지원유형에 해당함

2. 지원 상세내용

□ 추진체계

- 주관연구개발기관 : 해당지역 주축산업 분야의 기술개발 계획을 제시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
- 공동연구개발기관 :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과제수행에 필요한 기술 지원 및 부품개발 등

2. 지원 상세내용

□ 신청자격

| 지원유형 | 자격요건 |
|------------|--|
| ①자유공모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(주관연구개발기관)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에 사업장, 공장, 연구소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○ (공동연구개발기관) 해당 지역 또는 타 지역(수도권 포함)에 소재하는 대학, 연구기관, 기업*, TP, 지역특화센터, 지자체연구소 등 |
| ③지역혁신 선도기업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(주관연구개발기관) 지역중소기업법 제12조에 따라 선정된 '22년 1차 지역혁신 선도기업 3개社○ (공동연구개발기관) 해당 지역 또는 타 지역(수도권 포함)에 소재하는 대학, 연구기관, 기업*, TP, 지역특화센터, 지자체연구소 등 |

*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한하며, **중견·대기업은 참여 불가**

- 「지역산업육성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」 “6. 신청자격 등 검토”의 “신청 또는 지원 제외 사항”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

2. 지원 상세내용

□ 지원조건

| 지원유형 | 지원방식 | 지원예산 | 지원기간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|
| ① 자유공모 | 자유공모 | 최대 1년, 2억원 내외 | ○ 12개월(단년) - 2024.04.01.~2025.03.31. |
| ② 지역혁신 선도기업 | 자유공모 (제한경쟁) | 최대 2년, 6억원 이내 | ○ 21개월(다년) - (다년) 2024.04.01.~2025.12.31.(21개월) |

※ 지원기간 및 예산은 신규과제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
- 지역혁신 선도기업 : 다년과제는 일괄협약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 진도보고서 제출('24.12월말) 및 진도점검('25.1월) 실시

3. 연구개발비 부담비율

- 연구개발기관 유형별 정부(지자체)지원 및 기관부담 비율 적용

| 구 분 | 정부·지자체지원연구개발비 | 기관부담연구개발비 |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중소기업 (주관 또는 공동) | 해당기업 연구개발비의 75% 이하 | 해당기업 연구개발비의 25% 이상 | 해당기업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% 이상 |
| 기타 | 해당기관 연구개발비의 100% 이하 | 필요 시 부담 | |

4. 지원유형별 평가기준

① 자유공모

| 평가항목 | 세부항목 | 비고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기술성 (35점) | ○ 기술개발 개요(15점) | · 최종 산출물의 사업 목적과 부합성, 기술개발 차별성 등 |
| | ○ 사업목표 및 내용(20점) | · 정량적 목표, 연차별 계획의 적절성 및 실현 가능성, 사업목적 부합성 등 |
| 사업성 (35점) | ○ 사업화 계획(15점) | · 사업화 전략의 우수성, 사업화 타당성, 사업화 계획의 구체성 등 |
| | ○ 매출효과(20점) | · 매출·수출 목표 설정의 타당성, 신규시장 창출 및 수입대체 효과 등 |
| 연구개발 수행능력 (10점) | ○ 추진체계 및 연구인력 구성 (5점) | · 추진체계 구성의 적절성 · 연구인력 구성 및 역할분담의 명확성, 수행역량 등 |
| | ○ 사전준비 및 연구수행 인프라 (5점) | · 사전준비 및 계획수립의 우수성 · 실적 및 핵심기술 보유 여부, 연구개발비 편성의 적정성, 연구시설 등 인프라 보유여부 등 |
| 중점 지원방향과의 부합성(20점) | | · 기술개발 내용과 지역 주축산업별 중점지원 방향과의 부합성 등 |

4. 지원유형별 평가기준

② 지역혁신 선도기업

| 평가항목 | 세부항목 | 비고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|
| 기술성 (30점) | ○ 기술개발 개요(15점) | • 최종 산출물의 사업 목적과 부합성, 기술개발 차별성 등 |
| | ○ 사업목표 및 내용(15점) | • 정량적 목표, 연차별 계획의 적절성 및 실현 가능성, 사업목적 부합성 등 |
| 사업성 (30점) | ○ 사업화 계획(15점) | • 사업화 전략의 우수성, 사업화 타당성, 사업화 계획의 구체성 등 |
| | ○ 매출효과(15점) | • 매출·수출 목표 설정의 타당성, 신규시장 창출 및 수입대체 효과 등 |
| 경영능력 (10점) | ○ 추진체계 및 연구자원(5점) | • 추진체계 구성의 적절성 및 역할분담의 명확성, 수행역량 등 |
| | ○ 사전준비 및 연구능력(5점) | • 사전준비 및 계획수립의 우수성, 실적 및 핵심 기술 보유 여부, 연구개발비 편성의 적정성 등 |
| 지역생태계 기여도(30점) 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거래업체와의 동반성장 효과 등 지역생태계 조성 측면과의 부합성 등 • 기술개발 및 협업을 통한 지역사회 기여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 |

5. 기술료 징수

□ 납부대상

- 최종평가 “완료” 과제의 연구개발기관으로서,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하고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기관
 - * 최종평가 결과 ‘우수’, ‘보통’, ‘미흡’인 과제는 “완료” 과제로 간주

□ 납부방식

-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경상기술료(매출기반 약정기술료) 방식으로 기술료를 전문기관(정부지원연구개발비 해당) 또는 지역별 관리기관(지방자치단체지원연구개발비 해당, 지역사업평가단)에 납부
- 세부사항은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,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, 「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」에 따라 징수

5. 기술료 징수

< 경상기술료(매출기반 약정기술료) >

- ① 기술개발 종료 후 5년간 연구개발 결과물의 실시(사업화)를 통해 발생한 매출액(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)의 일정비율로 납부
- ②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은 전문기관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, 총매출액에 중소기업이 연구개발계획서 신청, 약정한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에 근거하여 산정

*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(www.smtech.go.kr) >> 정보마당 >> R&D사업 관련 공지사항 >> [기술료] 검색

| 기술료등납부 의무기관 | 제3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 |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| 납부 상한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중소기업 | 기술료 징수액의 5% | 수익금액×기술기여도×5% | 정부출연금의 10% |

6. 유의사항

-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및 하위규정과 「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」 관련 규정이 상이할 경우,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및 하위규정을 우선 적용
-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연구개발계획서 내용을 검토한 후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기간(단년 또는 다년) 및 연구개발비 일부가 조정될 수 있음
-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(RCMS)* 적용 대상 사업임
 - * (RCMS) 금융권 연계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(<http://www.rcms.go.kr>)
- 시설·기자재의 과도한 구매 등 해당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게 연구개발비가 편성되고 사용되는 과제는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
 - * 3천만원 이상 장비의 도입은 신규과제 선정평가위원회와 별도로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장비도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함

6. 유의사항

□ 간접비 내에서 「기술자료 임치제도*」 활용을 위한 현금 계상 가능

* 본 사업의 수행과제 결과물(기술자료)에 대해 기술임치 수수료 계상 가능

* 해당 제도 활용 시,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기술자료를 임치해야함

* 별도 세부내용은 「기술자료 임치제도 운용요령」 참고

□ '신청방법(제출서류) 안내 및 유의사항'의 '우대 및 감점 기준'에 따라
가·감점을 적용하되, 요령에 의거하여 가점은 최대 5점을 넘을 수 없음

□ '고용의무조건'을 충족하지 못할 시, 최종평가에서 “보통” 이상의
판정을 받을 수 없음

□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2조제3호나목부터 바목*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
연구개발기관의 경우, 본 사업에 선정·수행하게 되어도 중소기업·비영리
기관 공동과제에 해당되어 동시수행제한 제외과제로 적용

* 대학, 정부출연(연), 지방자치단체출연(연), 특정연구기관 등 비영리기관

7. 지원제외 대상

- 신청과제가 기개발·기지원 과제와의 차별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
 - * 단, 경쟁 또는 상호보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및 연구주제가 유사하더라도 연구 목표, 연구수행방식, 연구단계 등이 다른 경우 중복과제로 판단하지 않을 수 있음
- 국가연구개발사업에 **참여제한 중인 자 또는 기업**(또는 기관)
 - * 연구개발기관, 연구개발기관의 대표자 또는 연구책임자 등이 해당할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제외 처리하며, 참여연구자의 경우 해당자 변경 필요
- 현재 연구책임자로서 수행 중인 과제수가 **3개를 초과한 경우**
 - * 참여연구자의 수행 과제수가 **5개를 초과할 경우**, 참여연구자에서 제외 필요
- 「지역산업육성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」 6. 신청자격 등 검토를 바탕으로 지원제외 될 수 있음

7. 지원제외 대상

- 지역산업육성사업(R&D)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업이 당해연도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**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가능한 과제수**는 아래와 같음

| 수행 중 과제수 | 신규신청 가능 여부 | 신규수행 가능 과제수 |
|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3개 | 불가 | 불가 |
| 2개 | 가능 | 1개 |
| 1개 | 가능 | 2개 |
| 0개 | 가능 | 3개 |

※ 수행 중 과제 수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R&D사업을 기준으로 함

-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중 과제수에 포함하지 않음
 - 1) 접수 마감일로부터 **6개월 이내**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
 - 2) 사전조사, 기획·평가연구 또는 시험·검사·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
 - 3)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

- 4) 중소기업과 비영리기관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사업(비영리 법인 소속 연구자의 기술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)
- 5)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기술개발 과제
- 6) 위탁연구개발과제
- 7)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 구축 사업,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, 인력 양성 사업 및 학술활동사업 관련 과제
- 8)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
- 9) 그 밖에 연구개발 촉진 등을 위하여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필요가 있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과제

□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의 각종 보고서 제출,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, 성과 실적 입력(장비 구입실적 등), 회수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**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**

*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의무사항 불이행을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

7. 지원제외 대상

□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

* 단, 비영리기관 및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또는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공기업은 예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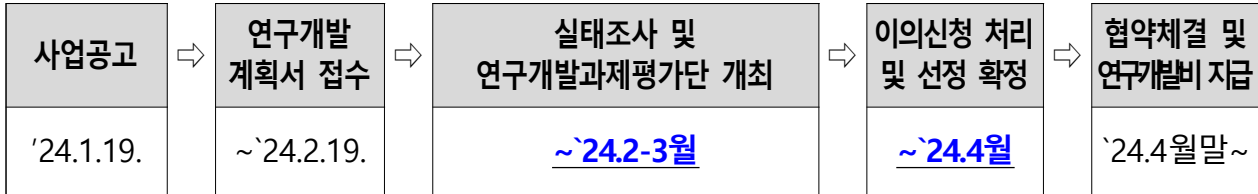
○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 및 각 기관의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
- 기업의 부도(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)
-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
-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,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
- 파산·회생절차·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
-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회계연도 결산 재무제표상 **부채비율이 1,000%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50% 이하인 기업**

-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**자본전액잠식**
 -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**감사의견이 “의견거절” 또는 “부적정”**
 - 대면평가(또는 실태조사) 등에서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재무제표(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대체 불가)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
 -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 및 각 기관의 대표자, 연구개발책임자가 세부사업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해당하는 경우
 -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특수관계인, 자회사 또는 계열사와 컨소시엄 구성 불가(인적·물적 구분이 곤란한 기업 간 또는 대표자가 동일한 기업간 포함)
- * 세부내용은 '신청방법(제출서류) 안내 및 유의사항' 또는 '관련규정' 참고
- 연구개발기관(주관, 공동, 위탁), 대표자(공동대표, 각자대표 포함),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'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'에 의해 보조사업 수행 대상 배제 또는 교부 제한 중에 있는 경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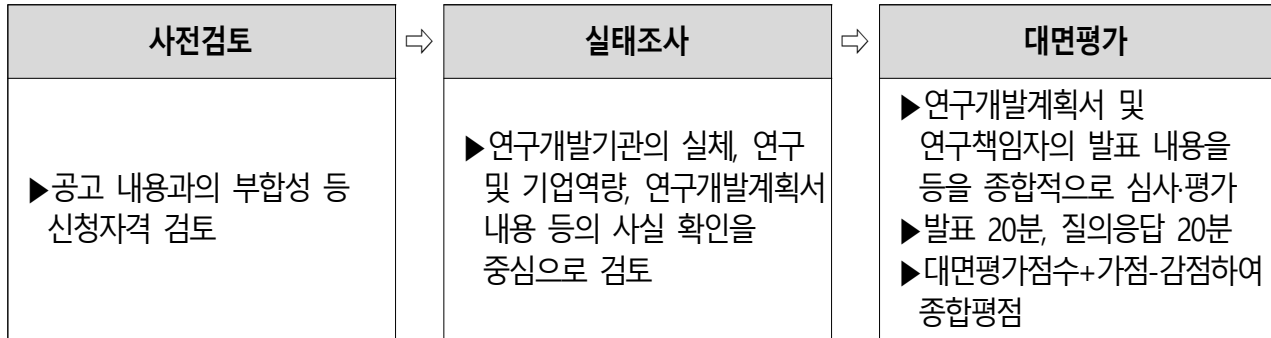
8. 절차 및 일정

□ 추진절차



* 상기 일정은 지역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

□ 연구개발과제평가



9.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

□ 신청기간

- 공고기간 : 2024.1.19.(금) ~ 2.19.(월)
- 접수기간 : 2024.2.5.(월) 09:00 ~ 2.19.(수) 18:00까지
 - * 접수마감일 18시 전까지 저장한 과제에 한하여 20시까지 추가제출 가능
 - * **18시 이후 접수취소를 하는 경우, 재접수 불가**

□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

- 온라인 접수처 : <http://www.smttech.go.kr>
- 온라인 접수(홈페이지 입력) → 신청서류 제출(온라인 접수시 일체 업로드)
 - * 접수완료 후 수정할 경우 "제출하기"를 클릭한 후 "제출확인" 확인 필요(접수 마감일 기준으로, **접수증이 있더라도 제출완료가 되지 않은 경우 접수취소**)
 - * **마감일에는 접속인원의 과부화로 전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**
 - * 접수 종료 이후 작성이 불가하며, 작성시간 및 전산 등의 이유로 **추가 제출 불가**

9.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

- 온라인 접수 문의처 : (국번없이) 1357
 - 신청서(양식) 제공 :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및 제출서류는 온라인 접수처(<http://www.smtech.go.kr>)에서 다운로드 가능
 - 신청서류 제출처 : **온라인 접수**시 신청서류 일체 업로드
- * [붙임1] 신청방법(제출서류) 안내 및 유의사항(양식포함) 참고하여 신청서 및 제출서류 일체 업로드, 향후 추가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별도 안내 예정

10. 문의처

사업총괄 및 전문기관

| 구분 | 소속 | 문의전화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사업총괄 | 중소벤처기업부(지역혁신정책과) | 1357 |
| 전문기관 |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(지역특화사업실) | (중소기업 통합콜센터)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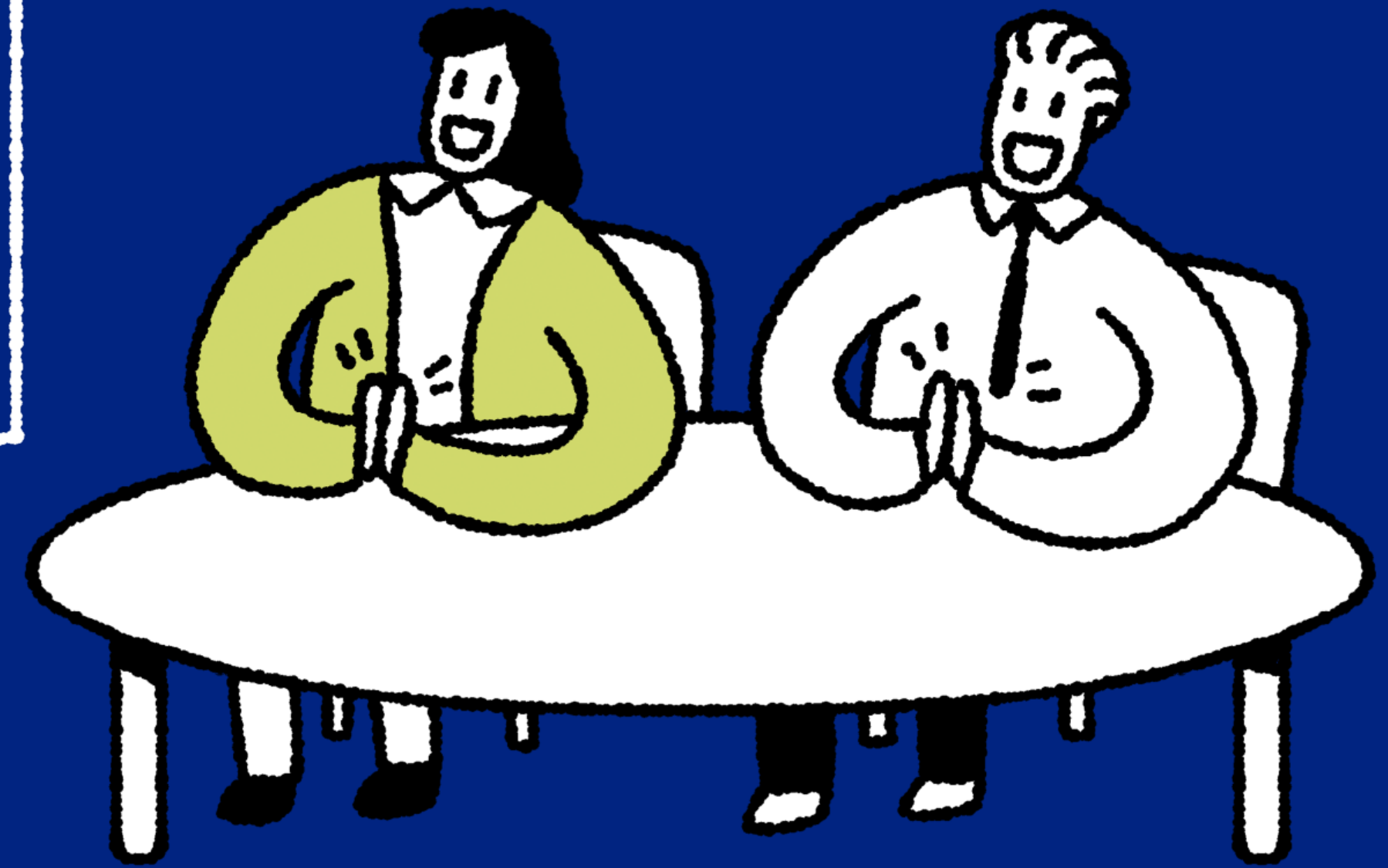
* 사업계획서 작성 및 증빙서류 관련문의는 아래의 지역별 관리기관에 문의

관리기관

| 기관명 | 주축산업 | 연락처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전북지역사업평가단 | 농생명바이오 | 063-278-9739/9740 |
| | 특수목적용지능형기계부품 | 063-278-9733 |
| | 탄소융복합소재 | 063-278-9740 |
| | 지역혁신선도기업 | 063-278-9739/9740 |

3

온라인 신청방법 및 평가일정



1. 온라인 신청방법 및 평가일정(R&D)

SMTECH 온라인 신청방법



공고확인

www.smtech.go.kr

지역특화산업육성(R&D)
사업공고문 확인



유형선택

www.smtech.go.kr

R&D 유형 확인(자유공모, 혁신선도)
*유형별 중복신청 불가



과제신청

접수기간
2.5.(월) ~ 2.19(월)

*접수마감 18시
*18시 이전 저장시 20시까지 수정가능



접수증출력

www.smtech.go.kr

[과제신청]>[과제신청내역]
접수증 출력 가능

1. 온라인 신청방법 및 평가일정(R&D)

과제신청-지원유형별 신청하기

2024년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통합공고 안내

'24년 통합공고문 보러 가기

SMTECH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통합관리시스템

[홈](#)
[로그인](#)
[회원가입](#)
[개인정보정정요청](#)
[공공데이터제공](#)
[통합로그인](#)

[과제신청](#)
[과제평가](#)
[과제수행](#)
[연구비집행](#)
[연구비정산](#)
정보마당
[고객지원](#)

정보마당

알림마당

- R&D 사업공고
- R&D사업관련 공지사항
- 기타 공지사항

자료마당 +

참여마당 +

지원 과제조회 +

기술연계정보 +

R&D 사업공고

[사업공고 일정표 보기](#)
[사업공고 목록보기](#)

- 사업의 해당 년도를 선택하세요. 2024년 검색하기

※ 현재 날짜를 기준으로 공고 진행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 📅 접수진행중
 📅 접수마감
 📅 접수예정

| 사업명 | 월별 계획 | | | | | | | 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|----|----|----|----|----|----|----|-----|-----|-----|
| | 1월 | 2월 | 3월 | 4월 | 5월 | 6월 | 7월 | 8월 | 9월 | 10월 | 11월 | 12월 |
| 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 ↳신진연구인력채용지원(참여기업접수용) | | 📅 | 📅 | | | | | | | | | |
| 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 ↳고경력연구인력채용지원(참여기업접수용) | 📅 | 📅 | | | | | | | | | | |
| 지역특화산업육성+(R&D) ↳지역주력산업육성 | | | 📅 | | | | | | | | | |
| 지역특화산업육성+(R&D) ↳지역주력산업육성(세종) | | | 📅 | | | | | | | | | |
| 지역특화산업육성+(R&D) ↳지역주력산업육성(제주) | | | 📅 | | | | | | | | | |
| (비R&D)지역특화산업육성 ↳산업기술단지거점기능강화 | 📅 | 📅 | | | | | | | | | | |
| (비R&D)지역특화산업육성 ↳(비R&D)지역주력산업육성 | 📅 | | | | | | | | | | | |
| (비R&D)지역특화산업육성 ↳(비R&D)지역주력산업육성(제주) | 📅 | | | | | | | | | | | |
| (비R&D)지역특화산업육성 ↳(비R&D)지역주력산업육성(세종) | 📅 | | | | | | | | | | | |
| 기술혁신기반조성 ↳지역중소기업 밸류체인 컨버전스지원 | 📅 | | | | | | | | | | | |

중소기업기술개발
통합관리시스템



정보마당



R&D 사업공고

1. 온라인 신청방법 및 평가일정(R&D)

과제신청-지원유형별 신청하기

▶ 지원사업구분

전체
 기업주도형
 협력형
 정책목적형

▶ 과제신청대상 공고

※ 과제신청 전 반드시 세부공고명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

| 사업명 | 세부공고명 | 공고일 | 신청기간 | 정부지원금 (백만) | 공고보기 | 신청하기 |
|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|------|
| 지역주력산업육성(세종) | (자유공모) 2023년 지역특화산업육성+(R&D)(세종) 지원계획 통합공고 | 2023-02-28 | 2023-02-28 ~ 2023-03-29 | 0 | 상세보기 | 신청하기 |
| 지역주력산업육성(세종) | (품목지정) 2023년 지역특화산업육성+(R&D)(세종) 지원계획 통합공고 | 2023-02-28 | 2023-02-28 ~ 2023-03-29 | 0 | 상세보기 | 신청하기 |
| 지역주력산업육성(세종) | (지역혁신선도기업) 2023년 지역특화산업육성+(R&D)(세종) 지원계획 통합공고 | 2023-02-28 | 2023-02-28 ~ 2023-03-29 | 0 | 상세보기 | 신청하기 |



사업명

지역주력산업육성

신청하기

신청하기를 통해 지원

1. 온라인 신청방법 및 평가일정(R&D)

과제신청-공고분류 선택

1.공고분류

| | | |
|----------|---|----|
| 사업분류 | 지역주력산업육성(세종) | |
| 공고 | 2023년 지역특화산업육성+(R&D)(세종)-지역주력산업육성 지원계획 통합공고 | |
| 세부공고 | (자유공모) 2023년 지역특화산업육성+(R&D)(세종) 지원계획 통합공고 | |
| 과제번호 | '저장' 또는 '다음단계' 버튼을 선택시 자동으로 부여됩니다. | |
| 과제명 | <input type="text"/> | |
| 과제명(영문명) | <input type="text"/> | |
| 제품/서비스명 | <input type="text"/> | |
| 과제지역 | 강원 | 선택 |
| 관리기관 |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| |
| 주력산업분류 | 선택 | |
| 지자체 | (사)중소기업융합중앙회 (사)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(사)한국스마트컨설팅협회 (사)한국엔젤투자협회 (재)충청남도경제진흥원 (재)강원지역사업평가단 (재)경남지역사업평가단 (재)경남테크노파크 (재)경북지역사업평가단 (재)경북테크노파크 (재)광주지역사업평가단 (재)광주테크노파크 (재)대구지역사업평가단 (재)대구테크노파크 (재)대전지역사업평가단 (재)부산지역사업평가단 (재)부산테크노파크 (재)세종지역사업평가단 (재)울산지역사업평가단 | |

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를 기준으로 소재지 지역과도 일치해야 합니다.

2.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연

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기업명 | 홈페이지 | |
| 설립년월일 | 상시 종업원수(명) | 50 |
| 사업자등록번호 | 법인등록번호 | 1161710012609 |
|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당시 정보 추가 입력 | 설립년월일 | <input type="text"/> |
| | 사업자등록번호 | <input type="text"/> |

지역명
 과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지역명 선택 (전북)

관리기관
 전북지역사업평가단

1. 온라인 신청방법 및 평가일정(R&D)

과제신청-연구개발기간 작성

과제신청

🏠 > 과제신청 > 과제신청 > 과제신청

Step1 / 주관연구개발기관정보
개발기간 및 기술개발개요

Step2 / 보안등급 신청 및 기술분류
수행기관 및 참여연구원

Step3 / 연구개발비
제출서류 등록

| | |
|------|----------|
| 과제번호 | S3351006 |
| 과제명 | test |

3.연구개발기간

연구개발기간 ~ 연차 적용 개월

4.기술개발개요

4.1 최종기술개발개요

주의사항) 저장등의 활동없이 로그
미리 문서로 작성하여 따로
해결방법) 최소 글자수만큼 임의의

30분 정도입니다.
접수기간내에 수정하세요.

| | | | | | | |
|------|----|----|----|----|----|----|
| 2023 | | 2월 | | | | |
| 일 | 월 | 화 | 수 | 목 | 금 | 토 |
| 29 | 30 | 31 | 1 | 2 | 3 | 4 |
| 5 | 6 | 7 | 8 | 9 | 10 | 11 |
| 12 | 13 | 14 | 15 | 16 | 17 | 18 |
| 19 | 20 | 21 | 22 | 23 | 24 | 25 |
| 26 | 27 | 28 | 1 | 2 | 3 | 4 |
| 오늘 | | | | | | |

연구개발기간

지원유형과 주관,공동 기관이
신청하고자 하는
연구개발기간 작성

기간

1. 자유공모형(단년)
2. 지역혁신선도기업(다년)

*세부내용 공고문 참조

1. 온라인 신청방법 및 평가일정(R&D)

SMTECH 시스템 이용 매뉴얼

SMTECH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

로그인 회원가입 개인정보정정요청 공공데이터제공 통합로그인

과제신청 과제평가 과제수행 연구비집행 연구비정산 정보마당 **고객지원**

고객지원

시스템 이용 매뉴얼

매뉴얼 현황표 보기 매뉴얼 목록보기

- 1. 과제기획 (1)
 - 제안서작성
 - 온라인 신청
- 2. 과제신청 (3)
 - 사전준비
 - 단계별신청
 - 사업계획서 작성
- 3. 협약 (2)
 - 사전준비사항
 - 온라인협약 절차
- 4. 사업운영 (3)
 - 협약변경
 - 보고서제출
- 5. 전자금융관리 (7)
 - 연구비집행
 - 사업비관리
- 6. 최종점검 및 최종평가 (2)
 - 최종점검
 - 최종보고서 제출
- 7. 온라인정산 (6)
 - 실적보고
 - 정산
- 8. 기술료 (10)
 - 기술료징수절차
 - 납부방법
- 9. 기타 (5)
 - 평가위원신청
 - 기타사항

중소기업기술개발
종합관리시스템



고객지원



이용매뉴얼

2.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방법

연구개발계획서 작성 방법

| 연구개발계획서 | | [v] 신청용 | | | | 보안등급 | |
|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|
| | | [] 협약용 | | | | 일반[], 보안[] | |
| 중앙행정기관명 | 중소벤처기업부 | 사업명 | 사업명 | | 지역특화산업육성+(R&D) | | |
| 전문기관명(해당 시 작성) |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| | 내역사업명 | | 지역주력산업육성 | | |
| 공고번호 | 중소벤처기업부 제2024호-45호 | 연구개발과제번호 | | | | | |
| 선정방식 | 정책지정[] 공모: 지정공모[] 품목공모[] 분야공모[] 자유공모[V] | | | | | | |
| 지역 | | | 주축산업명 | | | | |
| 기술분류 |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| 1순위 소분류 코드명 | % | 2순위 소분류 코드명 | % | 3순위 소분류 코드명 | % |
| | 부처기술분류 | 1순위 소분류 코드명 | % | 2순위 소분류 코드명 | % | 3순위 소분류 코드명 | % |
| 연구개발과제명 | 국문 | | | | | | |
| | 영문 | | | | | | |
| 주관연구개발기관 | 기관명 | | | | 사업자등록번호 | | |
| | 주소 | (우) | | | 법인등록번호 | | |
| 연구책임자 | 성명 | | | | 직위 | | |
| | 연락처 | 직장전화 | | | 휴대전화 | | |
| | | 전자우편 | | | 국가연구자번호 | | |

내역사업명

- 지역주력산업육성

공고번호

제2024호-45호

주축산업명

- 농생명바이오
- 특수목적용지능형기계부품
- 탄소융복합소재

2.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방법

연구개발계획서 작성 방법

| | | | | | | | 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|----|----|----------------|
| 연구개발기간 | 전체 | 2024. 04. 01 - 2025. 03. 31(12개월) 또는 2024. 04. 01 - 2025. 12. 31(21개월) | | | | | | | | | |
| | 1년차 | 2024. 04. 01 - 2025. 03. 31(12개월) 또는 2024. 04. 01 - 2024. 12. 31(9개월) | | | | | | | | | |
| | 2년차(해당 시) | 2025. 01. 01 - 2025. 12. 31(12개월) | | | | | | | | | |
| 연구개발비 (단위: 천원) | 정부지원 | 기관부담 | |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| | | | 합계 | | | 연구개발비 외 지원금 |
| | 연구개발비 현금 | 연구개발비 현금 | 연구개발비 현물 | 지방자치단체 현금 | 지방자치단체 현물 | 기타() 현금 | 기타() 현물 | 현금 | 현물 | 합계 | |
| 총계 | | | | | | | | | | | |
| 1년차 | | | | | | | | | | | |
| 2년차 | | | | | | | | | | | |

연구개발기간

지원유형별 개발기간 참고

(단년) 24. 4. 1. ~ 25. 3. 31.(12개월)

(선도) 23. 4. 1. ~ 24. 12. 31.(21개월)

연구개발비

지방비 연구개발비로 작성

*선정평가 결과통보시 확정

2.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방법

제출서류(연구내용 및 연구자 검증)

| 구분 | 제출서류 | 시스템 업로드 | | 비고 |
|----|--|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|
| | | 구분 | 내용 | |
| 1 | 연구개발계획서 | 필수 | 1부(원본, 주관) | 양식 1 |
| 2 | 연구개발기관 대표자의 참여의사 확인, 과제 참여 연구자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및 청렴서약서 | 필수 | 1부(연구개발기관별) | 양식 2 |
| 3 |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| 필수 | 1부(연구개발기관별) | 양식 3 |
| 4 |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활용 동의서 | 필수 | 1부(연구개발기관별) | 양식 4 |
| 5 | 선정평가 우대 및 감점 신청 확인서 | 해당시 | (관련 증빙서류필수) | 양식 5 |
| 6 | 신규인력 채용(예정) 확인서 | 필수 | 1부(영리개발기관별) | 양식 6 |
| 7 | 지역혁신 선도기업 협업제안서(지역혁신선도기업만 해당) | 해당시 | 지역혁신선도기업 | - |
| 8 |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및 신청과제 확인서(주관) | 필수 | 1부(연구개발기관별) | 양식 7 |
| 9 | 연구자의 동시수행과제 제한(3책5공) 기준 준수 약약서(주관, 공동) | 필수 | 1부(연구개발기관별) | 양식 8 |

※ 본 연구개발계획서 표지 및 별첨 양식 날인하여 온라인 제출

※ 5. 가점 관련 증빙서류 해당시 필수 제출

※ 6. 정부·지방자치단체지원 연구개발비 2억원당(이내) 1명 이상 신규채용 계획 필수 제출

※ 7. '지역혁신 선도기업 협업제안서'의 선정 및 유효기간을 통해 지역혁신선도기업 신청자격 여부 검토

필수서류

- 연구개발계획서
- 개인정보동의서
- 적정성 확인서
- 시스템이용 동의서
- 신규채용 확인서
- 신청과제 확인서
- 동시수행과제 기준 준수 약약서

보완서류

- 우대 및 감점 확인서
- 선도기업 협업제안서(선도)

2.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방법

제출서류(기업검증)

| 구분 | 제출서류 | 시스템 업로드 | | 비고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|----|
| | | 구분 | 내용 | |
| 1 | 최근년도 결산 확정 재무제표(표준재무제표증명) | 필수 | 1부(영리기관별) | - |
| 2 | 최근년도 국세, 지방세 납세 증명서 | 필수 | 1부(연구개발기관별) | - |
| 3 | 사업자등록증 | 필수 | 1부(연구개발기관별) | - |
| 4 | 중소기업 확인서 | 필수 | 1부(영리기관별) | - |

- ※ 사업자등록번호를 활용하여 신용정보조회를 할 수 없는 기업 또는 기관일 경우 회계법인, 세무서 등에서 공인된 재무제표로 별도 제출
- ※ 1. 최근년도('22-23) 결산(확정) 재무제표를 제출하되, '23년 이후 설립기업은 접수마감일 기준 '23년 결산(확정) 재무제표가 있을 경우에만 제출
- ※ 3.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 제출
- ※ 4.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(SMINFO, <http://sminfo.mss.go.kr>)에서 발급 가능(최근 6개월 이내 서류)

제출서류

- 재무제표 (결산 확정)
- 국세, 지방세 납입 증명서
- 사업자 등록증
- 중소기업 확인서

유의사항

- 6개월 이내 발급 서류

3. 주요일정

접수 및 선정평가 일정(안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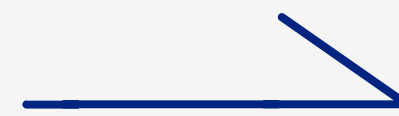
지역특화산업육성+(R&D)
사업신청 및 접수

~24.2.19(월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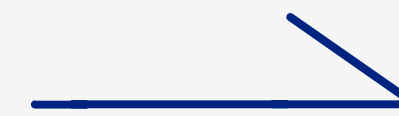
실태조사 및 선정평가

2~3 월 중



선정평가 이의신청 및 결과확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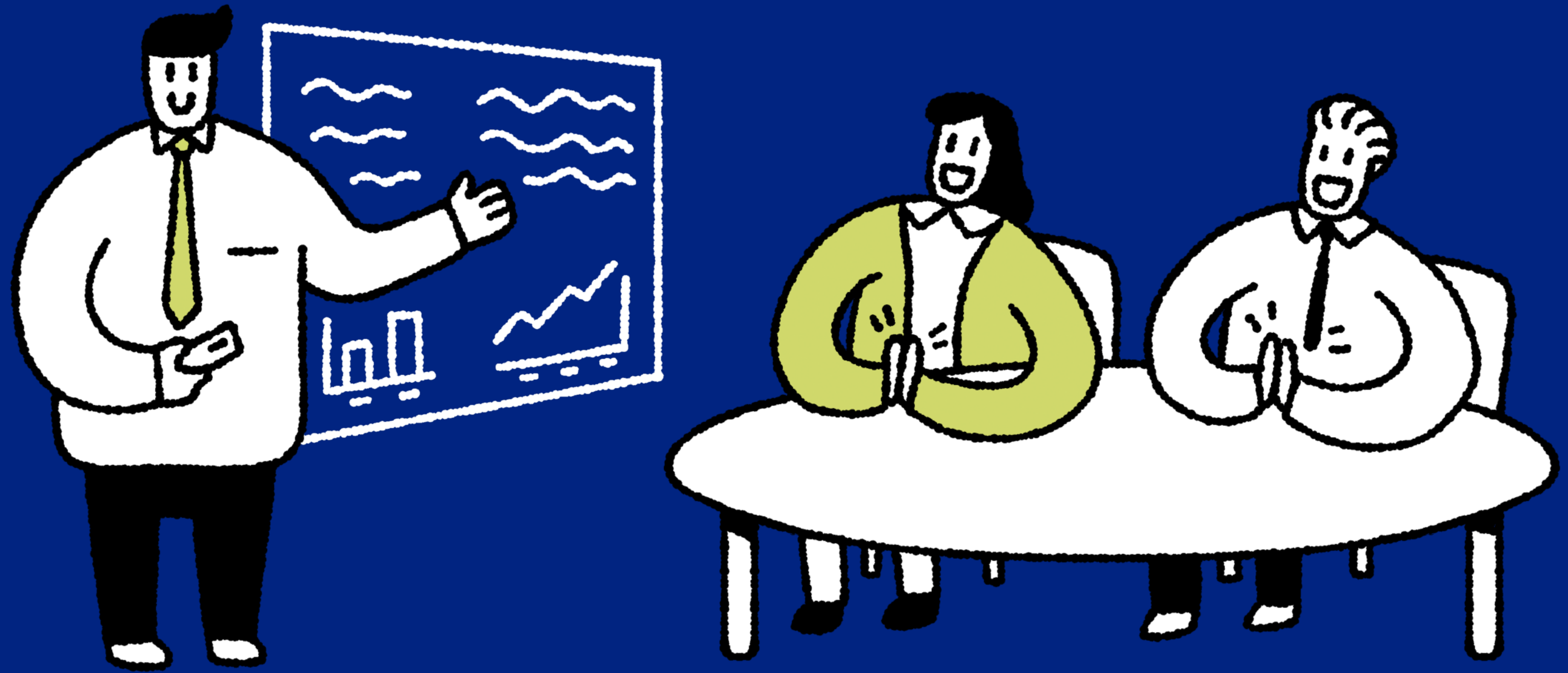
~4월 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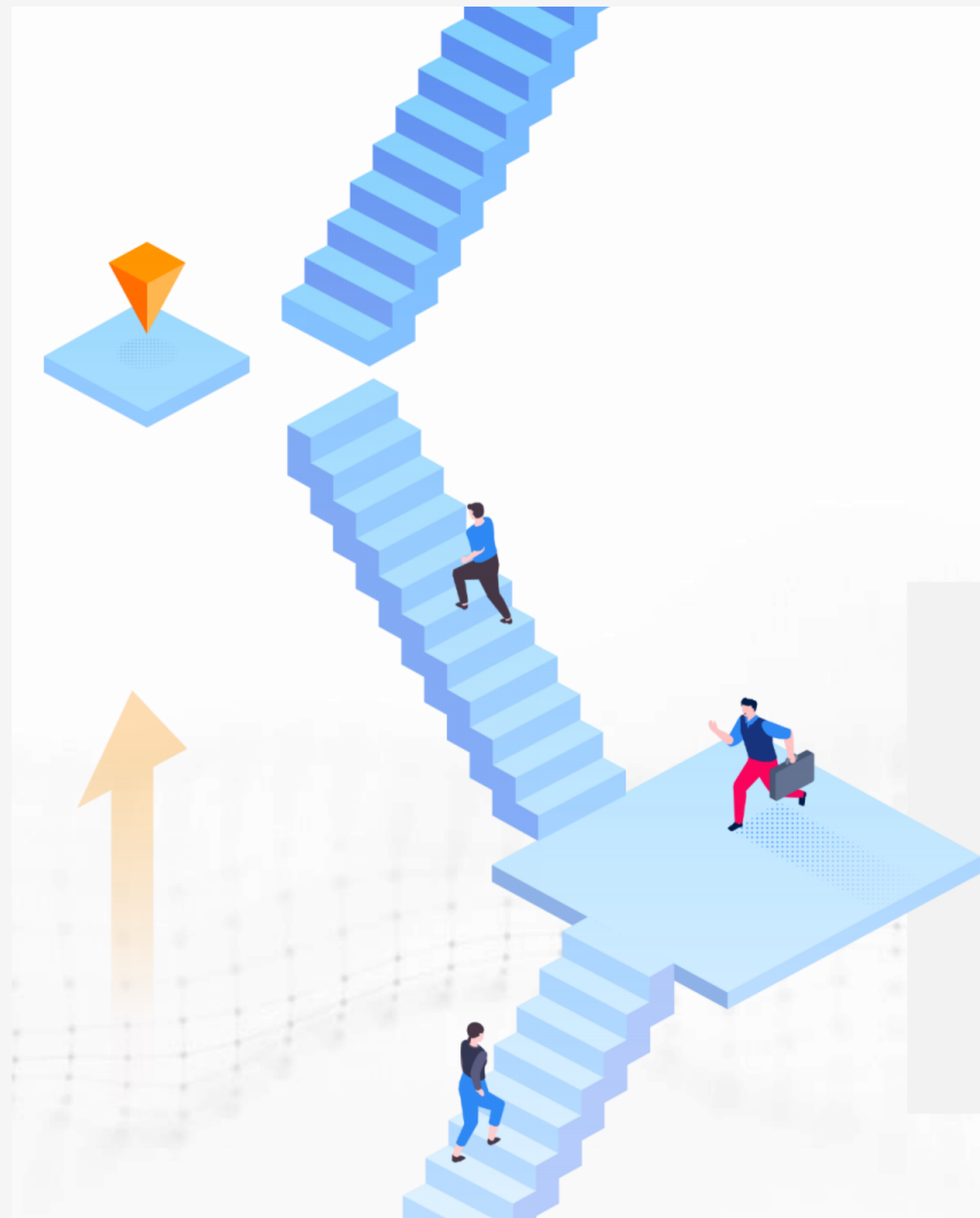


선정과제 협약 진행 및
연구개발비 지급

~4월 말

FAQ





Q (R&D)
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지원하고
싶은데 **해당 지역만** 가능한가요?

A
네! 지역특화+(R&D) 모든 유형의
주관연구개발기관은 해당 지역에
사업장, 공장, 연구소 중 1개를 보유
하고 있는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.



Q (R&D)
내역사업이 다른 경우
(주력산업육성/혁신선도기업)
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?

A 아닙니다. 공고 내 지원유형 중
1개 유형만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합니다.
※ 지원유형을 잘못 접수한 경우, 접수 마감(18시) 이후
변경이 불가하며 사전검토 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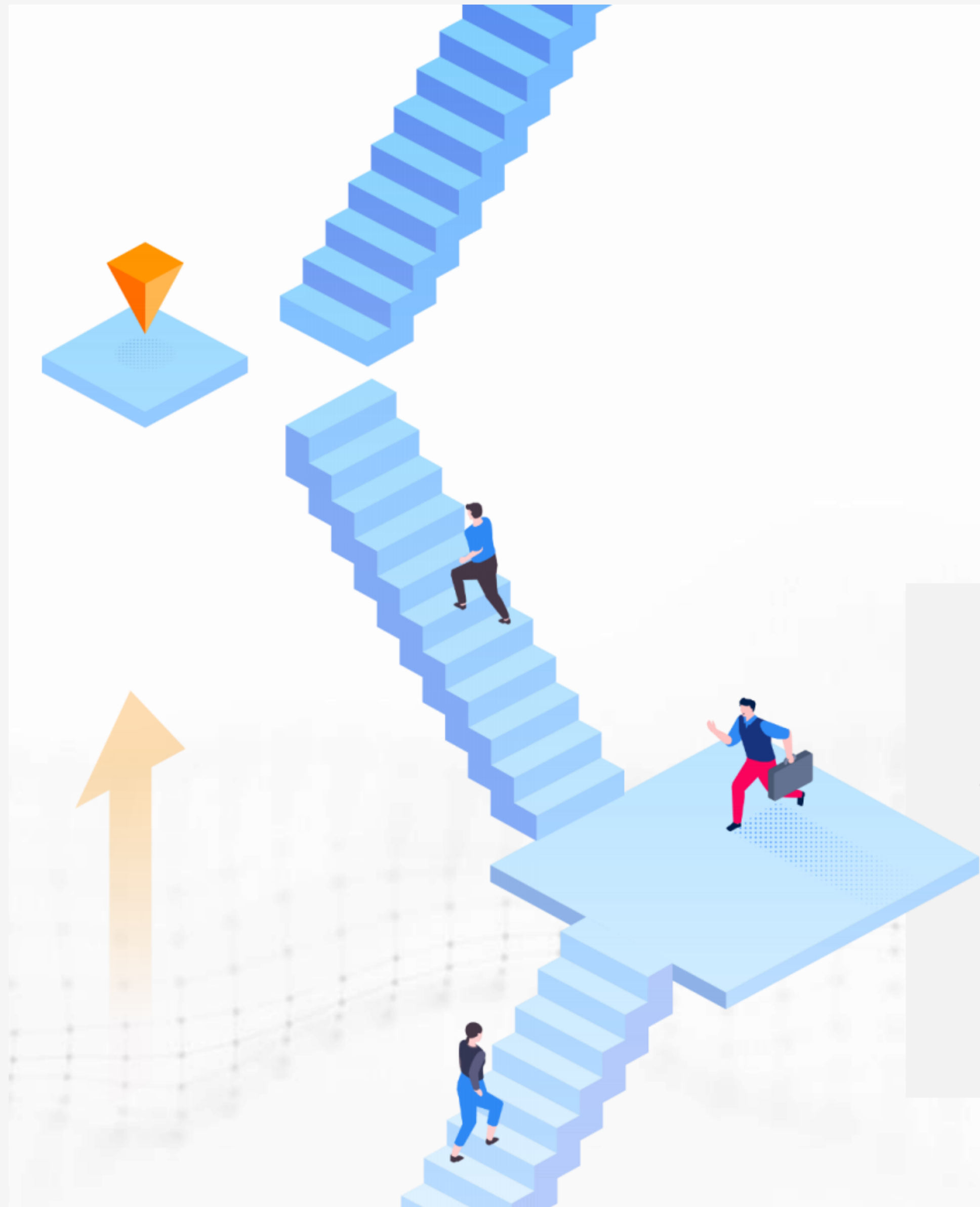
Q (R&D) 연구개발기간은 어떻게 되나요?

A

| 지원유형 | 지원방식 | 지원예산 | 지원기간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|
| ① 자유공모 | 자유공모 | 최대 1년, 2억원 내외 | ○ 12개월(단년) - 2024.04.01.~2025.03.31. |
| ② 지역혁신 선도기업 | 자유공모 (제한경쟁) | 최대 2년, 6억원 이내 | ○ 21개월(다년) - (다년) 2024.04.01.~2025.12.31.(21개월) |

※ 지원기간 및 예산은 신규과제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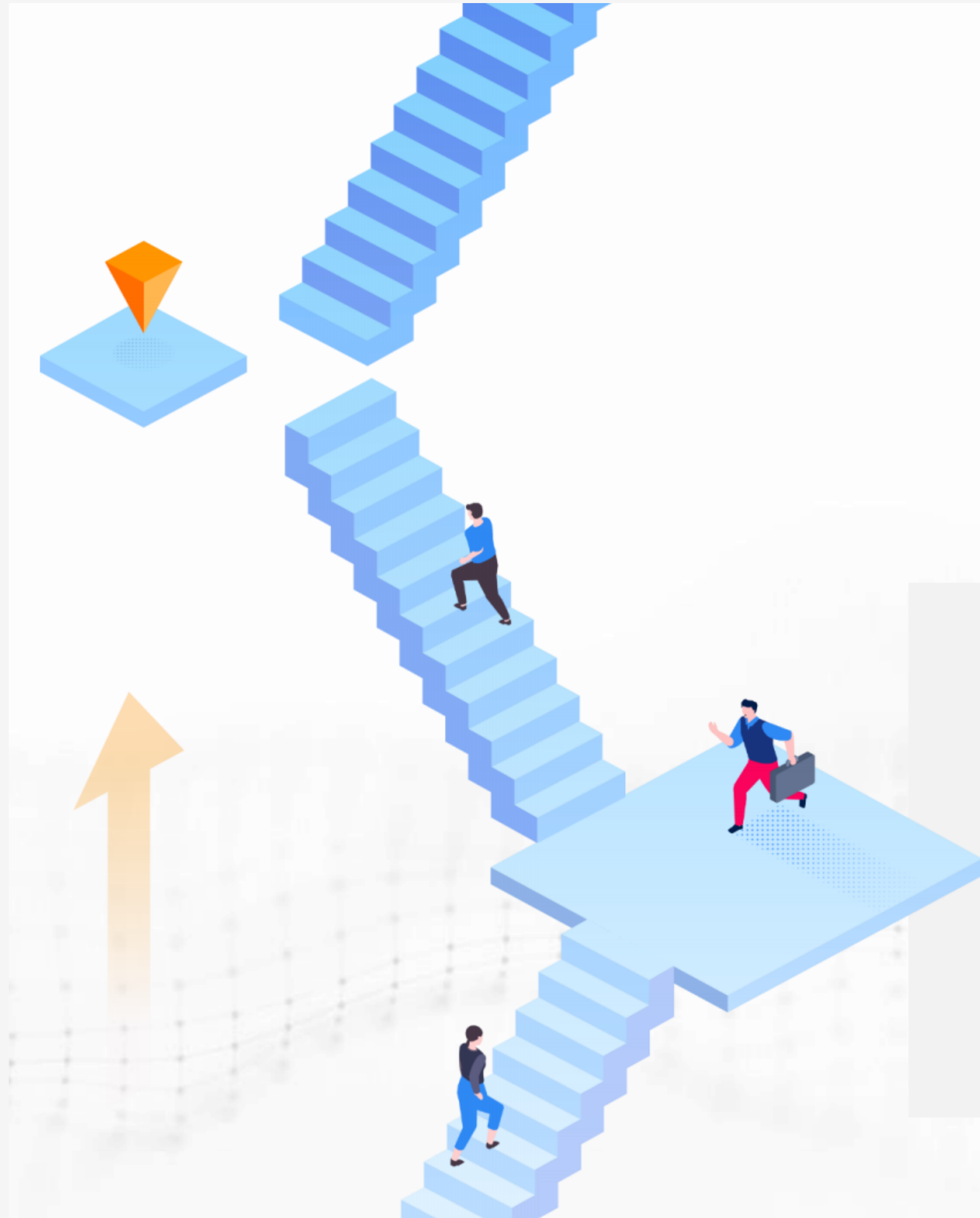
※ 연구개발기간 임의 지정불가



Q (R&D)
고용 의무조건은
어느 유형에 해당하나요?

A **모든 유형에** 해당합니다.
지역특화산업육성+(R&D) 지원기업
이라면 반드시 고용 의무조건*을 확인
해주셔야 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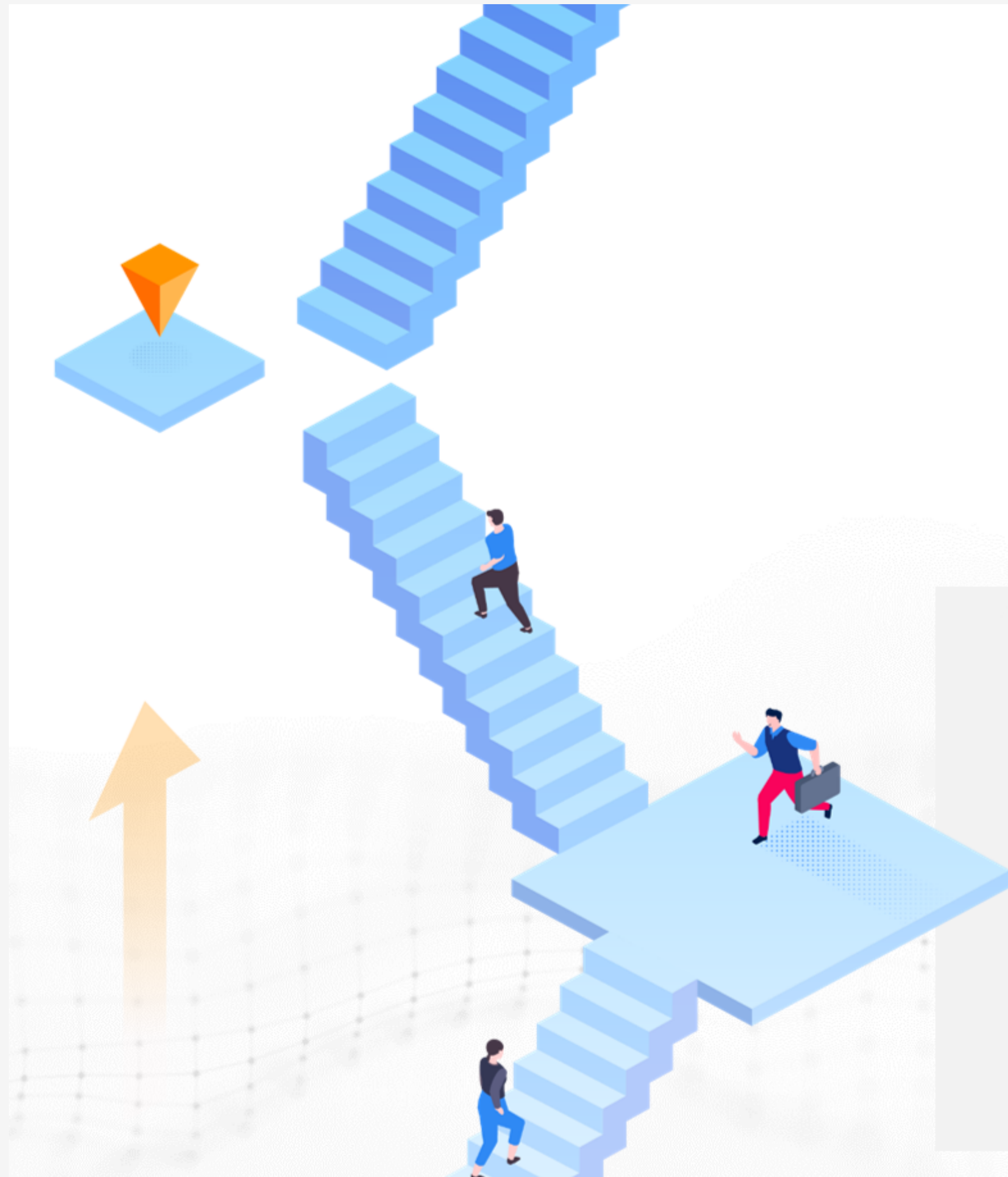
* 고용 의무조건 : 2억원 당 1명 채용



Q (R&D)
지역혁신선도기업은 꼭 협업제안서에
명시된 내용으로 신청이 가능한가요?

A
아닙니다. 협업제안서와 다른 내용
(과제명, 컨소시엄 구성 등)으로
R&D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
※ 지역혁신 선도기업으로 신청시 제출 필수



Q (R&D)
접수 이후 평가는 언제, 어떻게
진행되나요?

A
R&D 선정평가는 지역별 관리기관에서 진행
합니다. 선정평가는 접수 종료 이후
2-3월 중 진행되며, 세부일정은 공문을
통해 안내 예정입니다.

※ 지역별 관리기관(지역사업평가단)



Q (R&D)
과제 신청 시의 연구개발기간 이나
연구개발비가 변경될 수 있나요?

A
네.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기업에서 신청한
연구개발기간과 연구개발비가 일부
조정 될 수 있습니다.